



제 1054 호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규칙 제806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84

공 고

- 공고 제2012- 1161호 공시송달 공고(도립 소3-1호선) 107
- 공고 제2012- 1163호 건설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08
- 공고 제2012- 1165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구월보금자리주 택지구(1차)] 110
- 공고 제2012- 117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11
- 공고 제2012- 1175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12
- 공고 제2012- 11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 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114
- 공고 제2012- 1187호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가격 조정 및 정정지가 결정 공고 125
- 공고 제2012- 1191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131

고 시

- 고시 제2012- 83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132
- 고시 제2012- 84호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저예산 고시 138
- 고시 제2012- 85호 도로명 주소 고시 143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7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8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를 “응시원서 접수시작일의 20일 전에”로 한다.

제6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실험실시”를 “시험실시”로 한다.

제1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의사 발표”를 “의사 표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제1항제3호”로 하고,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며, “[별표 5]”를 “[별표 5] 및 [별표 5의2]”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특별 임용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며, “특별 임용 시험”을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하고, “특별 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특별 임용”은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 예정 직급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제6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를 “영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고, “특별 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며, “[별표 10]”을 “[별표 10] 및 [별표 10의2]”로 하고,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를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하고, “특별 임용”은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14조제9항 중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하고, “특별 임용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하며,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을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를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의 “특별임용”을 각각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영 제17조제1항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을 “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제12조”를 “제12조 및 [별표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특별임용” 및 “제15조의2”를 각각 “경력경쟁임용” 및 “제15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전직시험의 면제)”를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29조제6호”를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제24조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 특별 임용된”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구본청 및 보건소, 출장소”를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제1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3제3항, 제14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2, 제26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3호, 제27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14조제7항 및 제23조제3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 중 “의하고”를 각각 “따르고”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4 및 별표 8부터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5의2 및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개발<신설>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경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직렬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2의2] <신 설>경력경쟁임용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구분표

(제14조제5항제3호 관련)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6급, 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계급 직렬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u>전 직 류</u> (<u>농촌생활</u> <u>직류는</u> <u>제외한다.</u>)	농업계통의 <u>학</u> (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u>농촌생활</u>	농업계통의 <u>학</u> (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문(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제15조 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u>보건진료</u> <u><신 설></u>	<u>보건진료</u>	<u>조산사, 간호사</u>	<u>조산사, 간호사</u>	<u>조산사, 간호사</u>
<u>해양수산</u>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시 설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지 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관련)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급	기능5급<신설>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대한민국기술 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 년)	기사(2년), 산 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 사(2년), 기능 사(4년), 국제 기능올림픽 입 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 사(2년), 국제 기능올림픽 입 상자, 전국기 능대회 입상자 (2년)	기능사, 전국 기능대회 입상 자	기능사, 지방 기능경기 입상 자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 3급 : 8년이상
 -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신설>

[별표 5의2] <신 설>**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신설>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u>원자력, 에너지관리</u> 산업기사 : <u>에너지관리</u>
	금 속	기 술 사 : <u>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u>
	야 금	기 능 장 : <u>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u> 기 사 : <u>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u> 산업기사 : <u>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u>
	섬 유	기 술 사 : <u>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u> 기 사 : <u>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u> 산업기사 : <u>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u>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u>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u> 기 능 장 : <u>위험물, 가스</u> 기 사 : <u>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u> 산업기사 : <u>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u>
	자 원	기 술 사 : <u>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u> 기 사 : <u>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u> 산업기사 : <u>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u>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u>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u> 기 사 : <u>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u> 산업기사 : <u>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u>
	잠 업	기 사 : <u>생물공학</u>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u>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u> 기 사 : <u>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u> 산업기사 : <u>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u>
	식물검역	기 술 사 : <u>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u> 기 사 : <u>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u> 산업기사 : <u>종자, 식물보호, 산림, 임업종묘, 유기농업</u>
	축 산	기 술 사 : <u>축산, 식품</u> 기 사 : <u>축산, 식품</u> 산업기사 : <u>축산, 식품</u>
	생명유전	기 술 사 : <u>종자, 농화학, 식품</u> 기 사 : <u>종자, 식품, 생물공학</u> 산업기사 : <u>종자, 식품</u>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u>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u>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u> 산업기사 : <u>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u>
	산림자원	기 술 사 : <u>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u> 기 능 장 : <u>산림</u>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물검사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u>식품위생</u>	<u>식품위생</u>	<u>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u>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 <u>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u>
<u>환경</u>	<u>일반환경</u>	<u>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u> <u>기 능 장 : 산림</u> <u>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u> <u>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u>
	<u>수 질</u>	<u>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u> <u>기 능 장 : 산림</u> <u>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u> <u>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u>
	<u>대 기</u>	<u>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u> <u>기 능 장 : 산림</u> <u>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u> <u>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u>
	<u>폐 기 물</u>	<u>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u> <u>기 능 장 : 산림</u> <u>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u> <u>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u>
	<u>항 공</u>	<u>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u>
<u>시 설</u>	<u>정 비</u>	<u>기 사 : 항공</u> <u>산업기사 : 항공</u>
	<u>도시계획</u>	<u>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u> <u>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u> <u>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u> <u>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u>
	<u>일반토목</u>	<u>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u> <u>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u> <u>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u>
	<u>농업토목</u>	<u>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u> <u>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u>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변리사(4)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족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공사(8) 치과위생사(8)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공사(5) 치과위생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공사(2) 치과위생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 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환경측정분석사(3)	환경측정분석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기 계	기 계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계설비,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 식 품 개 발 <신 설>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의사(7)	기사(축산), 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명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물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의사(7), 전문간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계급 직렬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행정	행정수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가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신설>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u>선박항해</u>	<u>기술사(조선)</u> <u>1:2급 항해사</u>	<u>기사(조선, 항로표지)</u> <u>3:4급 항해사</u>	<u>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u> <u>5:6급 항해사</u>
	<u>선박기관</u>	<u>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설비, 조선)</u> <u>1:2급 기관사</u>	<u>기사(일반기계)</u> <u>3:4급 기관사</u>	<u>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u> <u>5:6급 기관사</u>
<u>보 건 보 건</u>	<u>보 건</u>	<u>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u> <u>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u>	<u>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u> <u>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u>	<u>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u> <u>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u>
<u>식품위생</u>	<u>식품위생</u>	<u>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u>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u>영양사, 위생사</u>	<u>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u>
<u>의료기술</u> <u><신 설></u>	<u>의료기술</u>	<u>기술사(방사선관리)</u> <u>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u>	<u>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u>	<u>응급구조사2급</u>
<u>의 무</u>	<u>일반의무</u>	<u>의사, 한의사</u>		
	<u>치 무</u>	<u>치과의사</u>		
<u>약 무</u>	<u>약 무</u>	<u>약사, 한의사, 한약사</u>		
	<u>약 제</u>			
<u>간 호</u>	<u>간 호</u>		<u>간호사, 조산사</u>	
<u>보건진료</u>	<u>보건진료</u>		<u>간호사, 조산사</u>	
<u>환 경</u>	<u>일반환경</u>	<u>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u> <u>의사, 약사, 수의사</u>	<u>기능장(산림)</u> <u>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u> <u>위생사</u>	<u>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u>
	<u>수 질</u>	<u>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u>	<u>기능장(산림)</u> <u>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u>	<u>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u>
	<u>대 기</u>	<u>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u>	<u>기능장(산림)</u> <u>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u>	<u>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u>
	<u>폐 기 물</u>	<u>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u>	<u>기능장(산림)</u> <u>기사(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u> <u>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u>	<u>산업기사(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u>
<u>항 공</u>	<u>일반항공</u>	<u>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u> <u>운송용조종사</u>	<u>기사(항공)</u> <u>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u>	<u>산업기사(항공)</u> <u>자가용조종사</u>

시 설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통신 기 술			

비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직렬	직류		
토목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	기계	기계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영림 원예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건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사역	위생 사역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

조리	조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비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 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 퓨 터 활 용 능력1급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 력2급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1 %	워드프로세서 3급	0.5 %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개정 2012. 1.)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신 설>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물류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	

		<u>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u>	
	<u>기계운전</u>	<u>기 술 사 :</u> 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u>기 능 장 :</u>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u>기 사 :</u>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u>산업기사 :</u>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산업안전, 교통 <u>기 능 사 :</u>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u>조 선</u>	<u>기 술 사 :</u> 조선 <u>기 사 :</u> 일반기계, 조선 <u>산업기사 :</u>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u>기 능 사 :</u>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u>일반전기</u>	<u>기 술 사 :</u>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u>기 능 장 :</u> 전기 <u>기 사 :</u>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u>산업기사 :</u>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u>기 능 사 :</u>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u>전 자</u>	<u>기 술 사 :</u>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 조직응용, 품질관리 <u>기 능 장 :</u> 전자기기 <u>기 사 :</u>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u>산업기사 :</u>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u>기 능 사 :</u> 메카트로닉스,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u>원 자 력</u>	<u>기 술 사 :</u>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u>기 사 :</u> 원자력, 열관리 <u>산업기사 :</u> 열관리	<u>기사자격증</u> <u>가산비용 적용 :</u>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 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 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 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 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 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 급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 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 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 위생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 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 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농화학,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보 건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어병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 어로	
	해양교통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기사자격증 가산

		기 사 :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가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	기사 자격증가산

		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 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령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	

			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단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화 학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능 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기 능 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농촌지도	작물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업연구 농촌지도	원예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잠업근충 잠업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식충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기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기 사 : <u>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u>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u> <u>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u> <u>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u> <u>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u> <u>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u> <u>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u> <u>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u> <u>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산업기사 : <u>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u> <u>건설기계정비, 케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u> <u>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u> <u>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u> <u>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u> <u>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u> <u>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u> <u>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u>축산, 식품</u> 기 사 : <u>축산, 식품</u> 산업기사 : <u>축산, 식품</u> 기 능 사 : <u>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u>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 성 동 위 원 소 취 급자(일반),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가축인공 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u> 기 을 장 : <u>산림</u>	
농촌지도	임 업	기 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u> <u>학</u> 산업기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u> 기 능 사 : <u>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u> <u>재료</u>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u>축산</u>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사 : <u>축산</u> 산업기사 : <u>축산</u> 기 능 사 : <u>축산</u>	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u>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u> <u>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u>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u> 기 능 사 : <u>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u>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u>수산양식, 수질관리</u> 기 사 : <u>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u> 산업기사 : <u>수산양식, 수질환경</u> 기 능 사 : <u>수산양식</u>	
	수산공학	기 술 사 : <u>해양, 어로, 수질관리</u> 기 사 : <u>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u> <u>로, 어병, 수질환경</u> 산업기사 : <u>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u> 기 능 사 : <u>어로</u>	
	수산가공	기 술 사 : <u>수산제조, 식품</u> 기 사 : <u>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u> 산업기사 : <u>수산제조, 식품</u> 기 능 사 : <u>수산식품가공</u>	
보건연구	의 학	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수 의사
	약 학	二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 산 비 율 적 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u>건축사</u>
--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3급	4급	5급	6급·기능 직6급이상	7급·기능 직7급이상	8급·기능 직8급	9급·기능 직9급이하
직무분야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연구사 지도사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 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 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2 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6급이상	7급	8급	9급이하
관련 직무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직무분야 민간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의료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 공무원

직렬	직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u>인쇄공업</u> , 제량, <u>원자력</u> , <u>조선</u> , <u>조선공학</u>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u>통신</u> , <u>물리</u>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학	<u>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u>
	금 속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자 원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농 업	일반농업	<u>광산</u> , <u>자원개발</u> , <u>지질</u>
	축 산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해양 수산	일반해양	축산
	일반수산	<u>수산</u> , <u>해양</u>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축 지	토목(토목건설)
통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u>전자통신기술</u>	
보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 공무원

직 렬	해 당 학 과
농촌지도	<u>농업계통(수의학포함)</u> <u>식품가공</u> , <u>농가정</u> , <u>영양</u> , <u>식품영양</u> , <u>농산제조</u> , <u>농화학</u> , <u>아동</u> , <u>가정교육</u> , <u>가정복지</u> , <u>주생활</u>
어촌지도	<u>수산</u> , <u>해양</u>

[별표 10]

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구경력	10년	8년	4년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신설>

연구관및지도관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별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 급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경력	8년	4년

비 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11]

연구직 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과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섬유		야금
	화학		섬유
	화학		화학공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업환경	농촌지도	농업
			농화학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업
			일반농업
	농업인총	농촌지도	농업경영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생명유전	농촌지도	원예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농화학
			일반농업
	축산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	공	업	농	업	기	계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업	임	전	직	류						
		조	경	농	촌	지	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해	양	수	산	수	산	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해	양	수	산	수	산	제	조
					수	산	물	검	사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건	축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도 직	직 류	기 직	술 직	직 류
<u>농 촌 지 도</u>	<u>농</u>	<u>업</u>	<u>농</u>	<u>일 반 농</u>	<u>업</u>
			<u>농 업 연 구</u>	<u>작</u>	<u>물</u>
				<u>작 물 보 호</u>	
				<u>농 업 환 경</u>	<u>경</u>
				<u>농 업 경 영</u>	<u>영</u>
				<u>원</u>	<u>예</u>
	<u>농 업 경 영</u>		<u>농 업 연 구</u>	<u>농 업 경 영</u>	<u>영</u>
	<u>임</u>	<u>업</u>	<u>농</u>	<u>전 직 류</u>	
			<u>농 지 연 구</u>	<u>임</u>	<u>업</u>
	<u>잠</u>	<u>업</u>	<u>농</u>	<u>조</u>	<u>경</u>
			<u>농 업 연 구</u>	<u>잠</u>	<u>업</u>
	<u>원</u>	<u>예</u>	<u>농 업 연 구</u>	<u>잠 업 곤 총</u>	
			<u>농 업 연 구</u>	<u>원</u>	<u>예</u>
	<u>축</u>	<u>산</u>	<u>농</u>	<u>축</u>	<u>산</u>
			<u>농 업 연 구</u>	<u>축</u>	<u>산</u>
	<u>가 축 위 생</u>		<u>수</u>	<u>수</u>	<u>의</u>
			<u>수 의 연 구</u>	<u>수</u>	<u>의</u>
	<u>농 촌 사 회</u>		<u>농 업 연 구</u>	<u>농 촌 생 활</u>	
	<u>농 업 기 계</u>		<u>공</u>	<u>농 업 기 계</u>	
			<u>농 업 연 구</u>	<u>농</u>	<u>공</u>
	<u>농 업 토 목</u>		<u>시</u>	<u>농 업 토 목</u>	
			<u>농 업 연 구</u>	<u>농</u>	<u>공</u>
	<u>농 촌 생 활</u>		<u>농 업 연 구</u>	<u>농 촌 생 활</u>	
<u>어 촌 지 도</u>	<u>어</u>	<u>촌</u>	<u>해 양 수 산</u>	<u>일 반 수 산</u>	
				<u>수 산 제 조</u>	
				<u>수 산 중 식</u>	
				<u>어</u>	<u>로</u>
				<u>수 산 물 검 사</u>	
			<u>해 양 수 산 연 구</u>	<u>전 직 류</u>	

[별표 12]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 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나목, 제2 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 간
3 급	[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가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가목, 제2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직 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자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기능6급 이상	7급·기능7급	8급·기능8급	9급·기능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기능 6급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직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고용직공무원					고용직
계약직공무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임용예정계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 학, 전문대학 (사립학교 및 동부설 연구소 의 교원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 이상)	전임 강 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정부투자기관및정 부산하기관단체		이사 (3년이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 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 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 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 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기 업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 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 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 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 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 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 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 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 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 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 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 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 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 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탈관리, 생산기 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 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 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 비, 객차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 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 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 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 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 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 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 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 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 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 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 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업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u>보건진료</u> <u><신 설></u>		<u>간호사, 조산사</u>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 시험, 토목, 건설안전)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통 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통 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표,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 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계급 직렬	연 구 사
해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생활지도 <삭제>	<삭제>
여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 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 신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 박, 선박기관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 림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 고 : 영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1.)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과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 대상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령	(직)			(한 자)				
※응 시 번 호			⑪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⑮제 회 시험		⑮ 사 진 반명합판 (3.5cm×4.5cm)
⑭응 시 직 령	(직)	⑯성명	(한글) (한자)	
※응 시 번 호		⑰주민등록 번 호		

간
인

※	⑲응 시 계 급	급	⑲제 회 시험		⑲ 사 진 반명합판 (3.5cm×4.5cm)	
	⑳응 시 직 령	(직)	㉑성 명			
	㉒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 2	선택 3		㉓주민등록 번 호
	※응 시 번 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와 시험명 ①⑩②②...당해 시험 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⑩②③... 정자로 기재하되, ⑩⑩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관서명과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과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 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⑬⑱...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8. 응시직렬 ⑨⑭⑲...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9. 응시번호란...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0. 사진란 ⑩⑲...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1.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별지 제9호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제13조 관련)

필 적 감 정 용 관	기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 표현 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과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의하여” 변경)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2조(적용범위) (“의한다” 변경)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② (생략) 1. ~ 4. (생략) 5. (생략) 6. ~ 7. (생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 4. (생략) 5. (“의한” 변경)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생략)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의하여” 변경)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u>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u>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u>의하여</u>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시작일의 20일 전에----- ----- ----- ---따라-----
제6조의2(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u>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u>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 ---따라----- ----- ----- ----- ----- -----

현행	개정안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 신 설 > < 신 설 >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의하여” 변경)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 행	개 정 안
<u>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u> <u>1. (삭제)</u> <u>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u> <u>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u> <u>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u> <u>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 <u>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u> <u>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u>	<u>< 삭 제 ></u>

현 행	개 정 안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u>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u>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u>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u>에 <u>의하여 실험실시</u>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u> (생략) <u>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u> < 신 설 > < 신 설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의하여”, “의거” 변경) ② (“의거” 변경) ③ (현행과 같음) ④ ----- <u>법 제27조제2항-----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u> ----- ----- ----- ----- ⑤ -----<u>제1항부터-----</u> -----<u>따라 시험실시-----</u> ----- <u>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u> (“의한” 변경) <u>제12조(시험위원) ①-----</u> ----- ----- ②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③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생략) 1. ~ 2. (생략) 3. <u>의사 발표</u>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5. (생략) ② (생략) ③ <u>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u>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의거” 변경) 1. ~ 2. (현행과 같음) 3. <u>의사 표현</u>-----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력경쟁임용시험</u>-----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u>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u>(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 ----- ----- -----<u>경력경쟁 임용시험</u>----- ----- ----- ----- ----- ----- ----- ----- ② (“의한” 변경)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u>의한</u>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u>따른</u>----- -----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의 <u>특별임용시험</u>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u>특별 임용 시험</u>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삭제) ④ <u>영 제17조제1항제3호</u>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u>의한 특별 임용 시험</u>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u>의하고</u>,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 4. (생략) ⑤ <u>영 제17조제1항제6호</u>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u>의하여</u>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u>특별 임용</u>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특별 임용</u>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u>----- --[별표 5] 및 [별표 5의2]----- ②----- ----- -----<u>따라</u>----- -----<u>경력경쟁임용시험 등</u>----- ----- ③ (삭제) ④ <u>영 제17조제1항제4호</u>----- -----<u>다른 일반</u> <u>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u> <u>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u>----- ----- ----- ----- ----- ----- -----<u>따르고</u>----- ----- 1. ~ 4. (현행과 같음) ⑤ <u>영 제17조제1항제7호</u>----- -----<u>따라</u>----- ----- -----<u>경력경쟁임용</u>----- ----- ----- 1. <u>경력경쟁임용</u>----- ----- ----- -----

현 행	개 정 안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u>당해</u>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u>출신학력별</u> <u>임용예정직급</u> ----- <u>대학졸업자</u>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u>기능6급, 기능7급</u> ----- <u>전문대학 졸업자</u> 7급, 8급, 연구사, 기능 <u>직 기능7급, 기능8등급</u> ----- <u>고등학교 졸업자</u> 9급, 기능직 <u>기능9급</u> <u>이하</u>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u>의한 특별</u> <u>임용시험</u>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u>경력</u> <u>연수가 경과한 자</u>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재 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u>특별</u> <u>임용</u>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u>의한다.</u> ⑧ (삭제)	2. ----- -----<u>해당</u>----- 3. 임용 예정 직급은 [별표 2의2]와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u>따른 경력</u> <u>경쟁임용시험 등</u>----- ----[별표 10] 및 [별표 10의2]----- ----- ---<u>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u>이어야 하며, <u>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u> <u>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u> <u>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u> <u>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u> <u>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u> <u>한다.</u>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u>따라</u>--- -----<u>경력</u> <u>경쟁임용</u>----- <u>따른다.</u> ⑧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u>특별임용 시험</u>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u>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예정일)</u>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생략)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u>해당여부는</u> 이를 "<u>자격증 소지여부</u>"로 "<u>특별임용시험</u>"은 "<u>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u>"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u>특별임용</u>) ① <u>영 제17조제1항제5호</u>의 규정에 <u>의하여</u>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u>특별임용</u>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u>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u>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⑨ 제1항부터-----<u>경력경쟁임용시험 등</u>----- -- <u>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u>----- ----- ----- ----- ----- -----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른</u>----- -----<u>해당 여부는</u> <u>"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u>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u>경력경쟁임용</u>) ① <u>영 제17조제1항제6호</u>-----<u>따라</u>----- ----- <u>경력경쟁임용</u>----- ----- 1. (생략) 2.----- -----<u>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u>-----

현행	개정안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 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 신 설 >	----- 3.----- -----제12조 및 [별표 10]----- 따른----- ②-----따라----- ---경력경쟁임용----- -----따라----- -----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따라-----해당 기관----- ----- -----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② (종전의 제1항, “의하여” 변경) ③ (종전의 제2항, “의하여” 변경) ④ 영 제29조제5호-----따라----- ----- -----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생략) ② (생략)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의하여” 변경)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의한”, “의하고”, “의하여” 변경)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한” 변경)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생략)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하여” 변경)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의한” 변경) ② (“의한”, “의하여” 변경) ③ (“의한”, “의한다” 변경)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생략)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u>의한</u>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u>기능직공무원</u> <u>특별 임용된</u>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의하여” 변경) ② ----- <u>따른</u> ----- ----- ----- ----- <u>기능직공무원</u> <u>으로 임용된</u> ----- -----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생략) 1. ~ 2. (생략) 3. (생략)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의하여” 변경) 1. ~ 2. (현행과 같음) 3. (“의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생략)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의하여” 변경)
제26조의2(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임용 권자는 <u>구본청 및 보건소, 출장소</u> 에 근 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 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 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 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 <u>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u> <u>소</u> ----- ----- ----- ----- -----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 리) ① (생략) ② (생략)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한” 변경)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보완하고, 임용시험 운영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기간 변경 (제5조)
- 응시수수료 관련 내용 개정 (제6조의2)
 - 응시수수료 환급규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조항의 신설
-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 내용 변경 (제7조)
- 학력제한 금지 규정의 삭제 (제9조)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신설 (제17조)
- 사업소의 명칭 신설 (제26조의2)
- 다음 각각 **【별표】** , **【별지】** 의 일부 내용 개정과 **【별표2의2】** , **【별표5의2】** , **【별표10의2】** 의 신설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2년 7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806호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전 까지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람권 및 매표)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그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람권의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매표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한다.

제4조(유물·자료 구입)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유물·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물 · 자료 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매도대상 유물 · 자료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3. 유물 · 자료 감정서(별지 제6호서식)
4. 유물 · 자료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② 구입된 유물 ·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유물 · 자료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 · 자료의 기증)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 ·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 · 자료 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유물 · 자료의 기탁)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 · 자료의 기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 · 자료의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물 ·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장고의 출입은 역사관 담당자가 지명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의 대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유물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대여 · 열람 · 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 인 관 랐 권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관 랐 권	관 랐 권
일 반 원	일 반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관 랐 권	관 랐 권
청 소 년·군 경 원	청 소 년·군 경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관 랐 권	관 랐 권
어 린 이 원	어 린 이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관 랐 권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단 체 관 랐 권	단 체 관 랐 권
일 반 명 원	일 반 명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단 체 관 랐 권	단 체 관 랐 권
청소년·군경 명 원	청소년·군경 명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No. _____	No. _____
소래역사관	소래역사관
단 체 관 랐 권	단 체 관 랐 권
어 린 이 명 원	어 린 이 명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사관

[별지 제3호서식]

관람현황 및 관람료 징수부

월일 (요일)	구분	관람 인원 총계	매 표 현 황														외 국 인	무료 관람 인원	불입액 (당 매 일표)	결 재		
			소계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단 체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불입 누계	담당자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별지 제4호서식]

유물 · 자료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명 칭	수량	시 대	재 질	출 처	크 기	희망가격
1							
2							
3							
4							
5							
6							
7							
8							
9							
10							
계							

1. 위와 같이 유물 · 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만·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 자료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 ·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

[접수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소장경위	- 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내 용	- 주요 특징 및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 진			

[별지 제6호서식]

유물 · 자료 감정서

연번	명칭	재질	수량	크기	시대	희망가	평가	치가	감가	정격	구입부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이름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유물 · 자료 기증원

[접수번호:]

기증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특기사항							
번호	명 칭	수량	시 대	재 질	출 처	크 기	특 징
1							
2							
3							
4							
5							
6							
계							

1. 위의 유물 및 자료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래역사관에 기증하고자 유물 · 자료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제 호

기 증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귀하께서 『소래역사관』에 기증하신 유물·자료에 대하여 전시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향수 증진에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기 증 목 록

[illegible]

[별지 제11호서식]

기탁신청서

[접수번호:]

기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특기사항							
번호	명칭	수량	시대	재질	출처	크기	특징
1							
2							
3							
4							
5							
6							
계							

위의 유물 및 자료를 소래역사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제 호

수탁확인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귀하께서 소래역사관에 기탁하신 ○○외 ○○건의 유물·자료를 수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수탁 목록

[illegible]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사 진 첨 부 란

1

(5cm × 7cm)

2

(5cm × 7cm)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번호

유 물 관 리 카 드

명 칭			수 량		
재 질			시 대		
크 기					
수장연유	수장경위		수장일자		
	출 토 지		입수처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				
	사진번호				

수 장 품 수 불 현 황

년	월	일	수 량	보관구분	실	장	단	반 입 처	현수량

사 진

[별지 제16호서식]

신청번호

유 물(□대여□열람□복제)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대상유물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상 태	비 고
□ 대 여 □ 열 란 □ 복 제	기 간			반환예정일	
	목 적				
	보관시설				
	운반방법			운반자	
	보상방법				
	비 고				

1.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 □열람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역사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신청번호

유 물(□대여□열람□복제)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대상유물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상 태	비 고
□ 대 여 □ 열 람 □ 복 제	기 간			반환예정일	
	목 적				
	보관시설				
	운반방법			운반자	
	보상방법				
	비 고				

귀하의 유물 (□대여 □열람 □복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소래역사관 개관에 따라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1조)
- 소래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제2조부터 제3조)
- 효과적인 유물·자료의 수집과 관리 (제4조부터 제9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림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3. 사업의 위치
 - 소로3-1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64-3번지일원(B=6m, L=493m)
 - 소로3-2호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66-42번지일원(B=6m, L=49.4m)
4. 보상시기 : 2012년 7월이후
5. 공고기간 : 2012. 7. 23 ~ 8. 7
6. 보상대상
 - 토 지 : 소로3-1호선, 소로3-7호선(90필지/ 4,015.0㎡)
 - 지장물 : 도로개설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7. 공시송달자

연번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 고
1	토지소유자	강민화	도림동	산48-1	이사	
2	토지소유자	김태남	도림동	산43-2	수취인 불명	
3	토지소유자	조용석	도림동	272-5외 6건	수취인 불명	
4	토지소유자	노복임	도림동	266-8외 2건	폐문부재	
5	토지소유자	신홍철	도림동	266-19외 2건	수취인 불명	
6	토지소유자	박미화	도림동	272외 2건	폐문부재	

8. 보상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63호

건설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장기폐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건설관리지침 제7장 제2호 나목(3)항(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때)

3.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한태 건설	박원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9-5 뉴인천빌딩 301호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수중공사사업	95-서울-02-93 송파-97-07-7 95-서울-10-99 송파-97-17-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 증가능금액) -2011.01.11 실효 (재)건설산 업 정 보 센 터 -4044(2011.01.21)
(주)타에스 건설	권오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8-4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포장공사사업	부천01-02-0003 부천01-10-0002 인천남구2000-13-05 인천남동03-16-0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 증가능금액) -2010.04.09 실효 (재)건설산 업 정 보 센 터 -0001(2010.04.15)

4. 청문일정

가. 일시 : 2012.08.06(월) 11:00(1시간)

나. 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문의 : 건설행정팀 453-2717)

5. 공고기간 : 2012.07.23 ~ 2012.08.06.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2- 1165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2. 6. 22.자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2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2. 사업의 종류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1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4. 공 고 기 간 : 2012. 07. 24 ~ 08. 07.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3)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
 - 김찬기 :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0 서해아파트 101-808
 - 이용삼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30,111동1402호(옥련동,럭키아파트)
 - 박윤희 :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30,111동1402호(옥련동,럭키아파트)
 - 이희연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6블럭 에코메트로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605-2703
8.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70호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이기철 외 2인

성명	주 소	처분사유	처 내 분 용	비 고
이기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97, 라동 504호 (만수동, 아주아파트)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박기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 18, 202호 (구월동, 성우빌라)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이기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길 39-10, 206호 (논현동)	운전면허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2. 공시송달기간 : 2012. 07. 24 ~ 2012. 08. 07 (15일간)

3. 내 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규정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취소) 위반

4. 참고사항

사전처분통지서 수령대상자는 2012.08.07일 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로 오셔서 사전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4, FAX 453-2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7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서창2지구 도로:대로 3-112호선<3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 “서창2지구 도로:대로 3-112호선<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7.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창2지구 도로:대로 3-112호선<3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2. 07.25. ~ 2012. 08.08.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3)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 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인천서창2(05,택2)지구 간선시설(서창(2) 주변도로 개설공사(대로3-112호선))

연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계인		
	성명			공부	현황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김경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15-3	임	임	391.5			
					전	86.5			
			415-4	임	임	74.1			
					전	310.9			
			415-5	임	임	813.3			
					전	642.7			
					소계	2,319.0			
					총계	2,319.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2 -11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7월 2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서관 운영조례중 관련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추가 규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및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 도서관 조례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 원활한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의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공공기관의 행사 포함(안 제10조제4항)
- 제15조 위원회의 각호 일반적 심의대상을 폐지하고 중요 결정사항

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조정 (안 제15조 각호 폐지 및 신설)

- 독서문화상 포상 및 표창(안 제31조제5항 신설)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운영 (안 제34조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안 제35조 신설)
- 별표2 도서관 시설사용료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453-5940, FAX 471-58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조례 관련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독서진흥관리법」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충
-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목적 및 현실성 보완
-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사용료 변경

☐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공공기관의 행사 포함(안 제10조제4항)
- 제15조 위원회의 각호 일반적 심의대상을 폐지하고 중요 결정사항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조정 (안 제15조 각호 폐지 및 신설)
 - 1000만원 이상 구입도서선정에 관한 사항
 - 예산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설립 및 변경, 조례의 개정, 기부금품의 사용 등
- 독서문화상 포상 및 표창 (안 제31조제5항 신설)
-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운영 (안 제34조 신설)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안 제35조 신설)
- 도서관 시설사용료 개정 (안 별표 2)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도서관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로 한다.

제12조 중 “제15조제6호”를 “제15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써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
2.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폐지,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에서”를 “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를 “관장이”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관련한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부터 제35조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7조로 하고, 제34조부터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4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은 관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시 간		
세미나실 (문화교실)	주 간	4	20,000원	09:00 ~ 18:00
	야 간	4	30,000원	18:00 ~ 22:00
다목적실 (소극장)	주 간	4	30,000원	09:00 ~ 18:00
	야 간	4	50,000원	18:00 ~ 22:00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 변동없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흑백	칼라	
복 사 기	A4	40	70	1장당
	B4	50	80	
	A3	60	90	
프 린 터	A4	50	80	
	B4	60	90	
	A3	70	100	

3.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u>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u> 시설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써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u> -----
제12조(자료구입) 자료는 관장이 연간계약에 따른 구입 또는 수시구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u>제15조제6호</u> 단서에 따른 수시구입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자료구입) ----- ----- -----<u>제15조제1호</u>-----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u>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u> 2. <u>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u> 3. <u>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4. <u>지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u> 5. <u>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u> 6. <u>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한다)</u> 7. <u>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u> 8. <u>공립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심의</u> 9. <u>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u>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u>구입 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단, 희망도서 또는 보충도서로써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수시구입은 제외)</u> 2. <u>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폐지,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u> 3. <u>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u> 4. <u>예산부담이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5. <u>도서관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제2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 하되,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31조(독서문화진흥) ① ~ ④ (생략) < 신 설 > 제3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생략) 제35조 (시행규칙) (생략) < 신 설 >	제25조(개관 및 휴관) ① ----- ----- -----관장은----- ----- ② ----- ----- -----관장이----- ----- ----- 제31조(독서문화진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관련한 제2항의 행사 및 대회 입상자 등에게 독서문화상을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 (다른 규정의 준용) (종전의 34조와 같음) 제37조 (시행규칙) (종전의 35조와 같음) 제34조(이용자 개인정보보호)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 근무수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 근무수칙은 도서관 안내데스크 등에 이용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 신 설 ></u>	제3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은 관장이 접수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의 예를, 물품과 시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의 예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87호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및 정정지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7.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결정·공시

1. 이의신청 토지의 가격조정 결과

- ① 대 상 : 40필지 【내역 별첨】
- ② 기 준 일 : 2012년 1월 1일
- ③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가격(원/㎡)

2. 정정지가 토지

- ① 대 상 : 구월동 638번지
- ② 기 준 일 : 2006년 7월 1일 ~ 2011년 1월 1일
- ③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가격(원/㎡) 【내역 별첨】
- ④ 결정·공시일 : 2012. 7. 27
- ⑤ 이의신청

- 기 간 : 2012. 7. 30 ~ 8. 28(30일)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등

- 제출처 및 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기재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가격조정 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위:원/㎡]

순번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조정지가	비고
1	구월동 704	250,000	260,000	
2	구월동 758	241,000	247,000	
3	간석동 5-7	69,500	75,200	
4	간석동 171-1	2,170,000	1,990,000	
5	만수동 5-399	530,000	850,000	
6	만수동 594-11	390,000	69,300	
7	만수동 964-6	1,100,000	1,070,000	
8	운연동 144-1	176,000	160,000	
9	운연동 144-4	176,000	160,000	
10	운연동 144-5	176,000	160,000	
11	운연동 195-101	121,000	125,000	
12	운연동 198-14	122,000	125,000	
13	운연동 201	156,000	158,000	
14	운연동 201-2	156,000	158,000	
15	운연동 201-4	164,000	165,000	
16	운연동 201-5	136,000	137,000	
17	운연동 268-2	572,000	430,000	
18	운연동 268-4	572,000	430,000	
19	운연동 459-1	142,000	135,000	
20	운연동 459-84	123,000	135,000	

[단위:원/㎡]

순번	토지소재지	결정지가	조정지가	비고
21	운연동 459-93	123,000	135,000	
22	운연동 459-94	107,000	117,000	
23	남촌동 122	203,000	214,000	
24	남촌동 122-1	203,000	214,000	
25	남촌동 122-2	205,000	216,000	
26	남촌동 166	200,000	214,000	
27	남촌동 512-20	319,000	364,000	
28	수산동 371-1	742,000	203,000	
29	도림동 413-2	133,000	155,000	
30	논현동 40-4	657,000	715,000	
31	논현동 111-155	2,620,000	2,510,000	
32	논현동 111-242	839,000	792,000	
33	논현동 111-344	1,010,000	960,000	
34	논현동 159-9	52,300	171,000	
35	논현동 642-7	1,430,000	1,360,000	
36	고잔동 372-4	667,000	589,000	
37	고잔동 379-4	621,000	532,000	
38	고잔동 478-4	980,000	950,000	
39	고잔동 535-1	727,000	792,000	
40	고잔동 535-2	310,000	792,000	

◎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내역

토지소재지	기준년월일	당초지가(원/㎡)	정정지가(원/㎡)
구월동 638번지	2006.7.1	201,000	변동없음(201,000)
구월동 638번지	2007.1.1	231,000	192,000
구월동 638번지	2008.1.1	363,000	282,000
구월동 638번지	2009.1.1	455,000	290,000
구월동 638번지	2010.1.1	464,000	291,000
구월동 638번지	2011.1.1	485,000	302,000

[별지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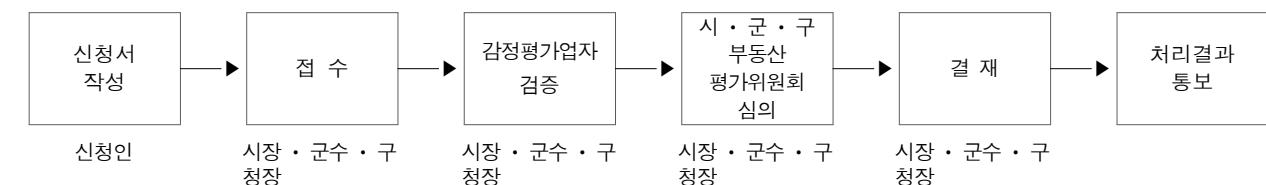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191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7.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2. 7. 27 ~ 2012. 8. 11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 453 - 2712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주 소	등기번호	결과	사유	비고
조한경	남동구 고잔로 ** (고잔동)	1442-0283-4438	반송	수취인불명	

6.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고 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㉔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세입㉕	㉕/㉔	세출㉕	㉕/㉔	차입잔액㉕ (㉕-㉔)	㉕/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 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463,815,455,250	473,432,147,732	102 %	384,741,670,720	83 %	88,690,477,012	19 %	88,690,477,012	15,901,478,290	4,387,697,820	3,380,142,200	2,549,018,580	62,472,140,122
일 반 회 계	419,189,323,230	426,350,989,184	102 %	364,853,984,960	87 %	61,497,004,224	15 %	61,497,004,224	13,805,937,240	4,387,697,820	3,380,142,200	2,380,173,390	37,543,053,574
특 별 회 계	44,626,132,020	47,081,158,548	106 %	19,887,685,760	45 %	27,193,472,788	61 %	27,193,472,788	2,095,541,050			168,845,190	24,929,086,548
기타특별회계	44,626,132,020	47,081,158,548	106 %	19,887,685,760	45 %	27,193,472,788	61 %	27,193,472,788	2,095,541,050			168,845,190	24,929,086,54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5,146,000	877,232,088	100 %	675,432,089	77 %	201,799,999	23 %	201,799,999				168,845,190	32,954,8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10,261,112,000	10,421,787,361	102 %	600,000,000	6 %	9,821,787,361	96 %	9,821,787,361					9,821,787,36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4,246,000	90,740,960	96 %	1,475,300	2 %	89,265,660	95 %	89,265,660					89,265,660
장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584,372,000	1,587,527,433	100 %	1,010,579,450	64 %	576,947,983	36 %	576,947,983	92,961,050				483,986,933
서창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531,439,000	9,076,419,737	106 %	6,250,062,960	73 %	2,826,356,777	33 %	2,826,356,777					2,826,356,777
도림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6,100,331,000	6,445,315,983	106 %	4,490,274,200	74 %	1,955,041,783	32 %	1,955,041,783					1,955,041,783
기반시설특별회계	661,260,280	661,261,631	100 %	188,380,780	28 %	472,880,851	72 %	472,880,851					472,880,851
주차장특별회계	16,518,225,740	17,920,873,355	108 %	6,671,480,981	40 %	11,249,392,374	68 %	11,249,392,374	2,002,580,000				9,246,812,374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별도 표시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구 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미수납액 ㉕=㉓-㉖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㉓	③/㉔
합 계	418,978,151,000	44,837,304,250	463,815,455,250	524,495,922,225	475,634,795,396	2,202,647,664	473,432,147,732	51,063,774,493	8,805,749,569	42,258,024,924	102.1 %	90.3 %
일 반 회 계	384,056,630,000	35,132,693,230	419,189,323,230	465,132,242,887	428,544,912,708	2,193,923,524	426,350,989,184	38,781,253,703	5,964,765,369	32,816,488,334	101.7 %	91.7 %
지방세수입	97,403,536,000		97,403,536,000	104,224,524,015	100,055,792,575	359,732,720	99,696,059,855	4,528,464,160	340,174,010	4,188,290,150	102.4 %	95.7 %
보통세	95,076,536,000		95,076,536,000	99,991,102,545	97,636,429,545	150,062,920	97,486,366,625	2,504,735,920	73,468,630	2,431,267,290	102.5 %	97.5 %
지난년도수입	2,327,000,000		2,327,000,000	4,233,421,470	2,419,363,030	209,669,800	2,209,693,230	2,023,728,240	266,705,380	1,757,022,860	95.0 %	52.2 %
세외수입	69,317,856,000	35,132,693,230	104,450,549,230	139,016,426,652	104,857,048,573	93,411,464	104,763,637,109	34,252,789,543	5,624,591,359	28,628,198,184	100.3 %	75.4 %
경상적세외 수입	28,304,453,000		28,304,453,000	28,609,367,935	28,569,470,230	42,974,905	28,526,495,325	82,872,610		82,872,610	100.8 %	99.7 %
임시적세외 수입	41,013,403,000	35,132,693,230	76,146,096,230	110,407,058,717	76,287,578,343	50,436,559	76,237,141,784	34,169,916,933	5,624,591,359	28,545,325,574	100.1 %	69.1 %
지방교부세	2,983,463,000		2,983,463,000	7,643,391,000	7,643,391,000		7,643,391,000				256.2 %	100.0 %
지방교부세	2,983,463,000		2,983,463,000	7,643,391,000	7,643,391,000		7,643,391,000				256.2 %	100.0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43,753,943,000		43,753,943,000	43,072,813,000	43,072,813,000		43,072,813,000				98.4 %	100.0 %
조정교부금	43,753,943,000		43,753,943,000	43,072,813,000	43,072,813,000		43,072,813,000				98.4 %	100.0 %
보조금	170,597,832,000		170,597,832,000	171,175,088,220	172,915,867,560	1,740,779,340	171,175,088,220				100.3 %	100.0 %

	국고보조금등	110,563,595,000		110,563,595,000	111,203,599,700	111,272,171,700	68,572,000	111,203,599,700				100.6 %	100.0 %
	시·도·군보조금등	60,034,237,000		60,034,237,000	59,971,488,520	61,643,695,860	1,672,207,340	59,971,488,520				99.9 %	100.0 %
특 별 회 계		34,921,521,000	9,704,611,020	44,626,132,020	59,363,679,338	47,089,882,688	8,724,140	47,081,158,548	12,282,520,790	2,840,984,200	9,441,536,590	105.5 %	79.3 %
	기타특별회계	34,921,521,000	9,704,611,020	44,626,132,020	59,363,679,338	47,089,882,688	8,724,140	47,081,158,548	12,282,520,790	2,840,984,200	9,441,536,590	105.5 %	79.3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5,146,000		875,146,000	1,108,847,398	877,232,088		877,232,088	231,615,310	59,985,200	171,630,110	100.2 %	79.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10,261,112,000		10,261,112,000	10,421,787,361	10,421,787,361		10,421,787,361				101.6 %	100.0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4,246,000		94,246,000	94,089,420	90,743,260	2,300	90,740,960	3,348,460		3,348,460	96.3 %	96.4 %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84,372,000		1,584,372,000	1,587,527,433	1,587,527,433		1,587,527,433				100.2 %	100.0 %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05,509,000	4,525,930,000	8,531,439,000	9,076,419,737	9,076,419,737		9,076,419,737				106.4 %	100.0 %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40,331,000	3,360,000,000	6,100,331,000	6,445,315,983	6,445,315,983		6,445,315,983				105.7 %	100.0 %
	기반시설 특별회계	452,081,000	209,179,280	661,260,280	661,261,631	661,261,631		661,261,631				100.0 %	100.0 %
	주차장특별회계	14,908,724,000	1,609,501,740	16,518,225,740	29,968,430,375	17,929,595,195	8,721,840	17,920,873,355	12,047,557,020	2,780,999,000	9,266,558,020	108.5 %	59.8 %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액㉒	예산현액 ㉓=㉑+ ㉒	지출원인 행위액㉔	지출액 ㉕	다음연도 이월액㉖				집행잔액 ㉗=㉕-㉖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418,978,151,000	44,837,304,250	463,815,455,250	395,010,978,760	384,741,670,720	23,669,318,310	15,901,478,290	4,387,697,820	3,380,142,200	55,404,466,220
일 반 회 계	384,056,630,000	35,132,693,230	419,189,323,230	375,085,056,870	364,853,984,960	21,573,777,260	13,805,937,240	4,387,697,820	3,380,142,200	32,761,561,010
일반공공행정	40,725,214,000	8,342,938,090	49,068,152,090	45,144,010,215	43,676,874,435	2,015,039,420	161,360,000	181,344,630	1,672,334,790	3,376,238,235
공공질서및안전	1,853,859,000	150,000,000	2,003,859,000	1,697,768,240	1,697,538,200					306,320,800
교육	9,047,980,000		9,047,980,000	8,954,291,340	8,954,291,340					93,688,660
문화및관광	9,843,247,000	7,812,081,280	17,655,328,280	15,307,939,470	13,635,831,210	3,692,081,720	984,274,310	1,000,000,000	1,707,807,410	327,415,350
환경보호	17,126,648,000	143,830,600	17,270,478,600	15,608,139,710	15,608,139,710	1,039,500,000	1,039,500,000			622,838,890
사회복지	171,678,495,000	6,146,951,960	177,825,446,960	175,964,356,650	175,664,715,910	441,640,740	142,000,000	299,640,740		1,719,090,310
보건	12,285,892,000		12,285,892,000	11,647,281,310	10,502,589,180	1,523,941,320	1,485,849,520	38,091,800		259,361,500
농림해양수산	3,766,105,000		3,766,105,000	3,033,820,980	3,033,820,980	108,000,000	108,000,000			624,284,020
산업·중소기업	3,561,714,000	4,845,000,000	8,406,714,000	5,465,008,730	2,453,260,050	4,163,641,360	2,193,737,240	1,969,904,120		1,789,812,590

	수송및교통	17,556,839,000	5,461,160,780	23,017,999,780	19,378,516,970	17,687,926,840	4,401,579,170	4,401,579,170			928,493,770
	국토및지역개발	19,759,828,000	2,517,555,520	22,277,383,520	17,827,358,780	16,882,582,030	4,188,353,530	3,289,637,000	898,716,530		1,206,447,960
	예비비	21,023,683,000	△286,825,000	20,736,858,000							20,736,858,000
	기타	55,827,126,000		55,827,126,000	55,056,564,475	55,056,415,075					770,710,925
특 별 회 계		34,921,521,000	9,704,611,020	44,626,132,020	19,925,921,890	19,887,685,760	2,095,541,050	2,095,541,050			22,642,905,210
	기타특별회계	34,921,521,000	9,704,611,020	44,626,132,020	19,925,921,890	19,887,685,760	2,095,541,050	2,095,541,050			22,642,905,21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5,146,000		875,146,000	675,432,089	675,432,089					199,713,9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10,261,112,000		10,261,112,000	600,000,000	600,000,000					9,661,112,00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4,246,000		94,246,000	1,475,300	1,475,300					92,770,700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84,372,000		1,584,372,000	1,010,579,450	1,010,579,450	92,961,050	92,961,050			480,831,50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05,509,000	4,525,930,000	8,531,439,000	6,250,062,960	6,250,062,960					2,281,376,040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40,331,000	3,360,000,000	6,100,331,000	4,490,274,200	4,490,274,200					1,610,056,800
	기반시설 특별회계	452,081,000	209,179,280	661,260,280	188,380,780	188,380,780					472,879,500
	주차장특별회계	14,908,724,000	1,609,501,740	16,518,225,740	6,709,717,111	6,671,480,981	2,002,580,000	2,002,580,000			7,844,164,759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84호

2012년도 예 산 고 시

제1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2012. 7. 20)에서 의결, 확정된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2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440,357,111	425,916,024	14,441,087	3.4	
일 반 회 계	394,831,493	389,455,208	5,376,285	1.4	
특 별 회 계	45,525,618	36,460,816	0	0.0	
의료급여기금	756,989	635,187	121,802	19.2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20,219,361	20,219,361	0	0.0	
지하수 관리	105,008	105,008	0	0.0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536,346	607,270	△70,924	△11.7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3,453,052	2,284,182	1,168,870	51.2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412,670	2,831,276	△418,606	△14.8	
기 반 시 설	477,880	461,032	16,848	3.7	
주 차 장	17,564,312	9,317,500	8,246,812	88.5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94,831,493	100	389,455,208	100	5,376,285	1.4
세 입	지방세수입	94,130,207	23.8	94,130,207	24.2	0	0.0
	세 외 수 입	60,872,722	15.4	61,176,391	15.7	△303,669	△0.5
	경상적세외수입	25,349,907	6.4	25,210,512	6.5	139,395	0.6
	임시적세외수입	35,522,815	9.0	35,965,879	9.2	△443,064	△1.2
	지방교부세	6,667,449	1.7	6,365,800	1.6	301,649	0.0
	조정교부금	41,432,448	10.5	40,862,448	10.5	570,000	1.4
	보 조 금	191,728,667	48.6	186,920,362	48.0	4,808,305	2.6
	국고보조금등	122,513,290	31.0	117,032,409	30.1	5,480,881	4.7
	시도비보조금등	69,215,377	17.5	69,887,953	17.9	△672,576	△1.0
	지 방 채	0	0.0	0	0.0	0	0.0
	국내차입금	0	0.0	0	0.0	0	0.0
세 출	인 건 비	51,478,608	13.0	50,918,568	13.1	560,040	1.1
	물 건 비	23,045,576	5.8	22,818,436	5.9	227,140	1.0
	경 상 이 전	237,233,196	60.1	234,465,362	60.2	2,767,834	1.2
	자 본 지 출	72,308,125	18.3	68,196,382	17.5	4,111,743	6.0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 전 재 원	250,000	0.1	250,000	0.1	0	0.0
	내 부 거 래	3,323,070	0.8	3,323,070	0.9	0	0.0
	예비비및기타	7,192,918	1.8	9,483,390	2.4	△2,290,472	△24.2

나.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394,831,493	100	389,455,208	100	5,376,285	1.4
기 능 별	일반공공행정	33,338,056	8.4	32,549,999	8.4	788,057	2.4
	공공질서및안전	2,375,968	0.6	1,381,031	0.4	994,937	72.0
	교 육	11,371,626	2.9	10,954,892	2.8	416,734	3.8
	문화및관광	12,099,127	3.1	11,057,647	2.8	1,041,480	9.4
	환경보호	15,563,406	3.9	15,504,858	4.0	58,548	0.4
	사회복지	195,141,523	49.4	192,688,142	49.5	2,453,381	1.3
	보 건	10,717,942	2.7	10,670,445	2.7	47,497	0.4
	농림해양수산	3,882,667	1.0	3,721,878	1.0	160,789	4.3
	산업.중소기업	6,753,537	1.7	6,177,686	1.6	575,851	9.3
	수송및교통	18,907,577	4.8	18,857,465	4.8	50,112	0.3
	국토및지역개발	19,219,743	4.9	18,663,627	4.8	556,116	3.0
	예 비 비	4,102,101	1.0	6,477,748	1.7	△2,375,647	△36.7
	기 타	61,358,220	15.5	60,749,790	15.6	608,430	1.0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45,525,618	100	36,460,816	100	9,064,802	24.9
세 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44,994,028	98.8	35,889,226	98.4	0	0.0
	경상적세외수입	3,915,928	8.6	3,397,567	9.3	0	0.0
	임시적세외수입	41,078,100	90.2	32,491,659	89.1	8,586,441	26.4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531,590	1.2	571,590	1.6	△40,000	△7.0
	국고보조금등	415,496	0.9	447,496	1.2	△32,000	△7.2
	시도비보조금등	116,094	0.3	124,094	0.3	△8,000	△6.4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45,525,618	100	36,460,816	100	9,064,802	24.9
성 질 별	인 건 비	937,321	2.1	896,107	2.5	41,214	4.6
	물 건 비	1,005,718	2.2	1,005,718	2.8	0	0.0
	경상이전	517,711	1.1	557,711	1.5	△40,000	△7.2
	자본지출	20,094,735	44.1	19,231,250	52.7	863,485	4.5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134,800	0.3	134,779	0.4	21	0.0
	예비비및기타	22,835,333	50.2	14,635,251	40.1	8,200,082	56.0
기 능 별	환경보호	20,219,361	44.4	20,219,361	55.5	0	0.0
	사회복지	701,567	1.5	605,300	1.7	96,267	15.9
	수송및교통	17,189,281	37.8	8,950,659	24.5	8,238,622	92.0
	국토및지역개발	6,984,956	15.3	6,288,768	17.2	696,188	11.1
	기 타	430,453	0.9	396,728	1.1	33,725	8.5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8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32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1외 4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4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7.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9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375번길	32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7.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375번길 32번 기 초구간에 위치하여 3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42-7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7.2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765번길 42-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2-7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10, 1143-1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8-17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북로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69-9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5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2-2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7-7, 507-1, 507-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52-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52-2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4, 590-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5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0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5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1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4, 587-22, 587-28, 595-16, 587-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18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3, 587-27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5-45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7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7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87-16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5-5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14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9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4-16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9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5-8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1번길	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95-11, 595-8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65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88-36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6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88-16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46-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0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4-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3-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4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1-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3-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3-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59-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9-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5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2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7-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3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5-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7-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9-4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30번길	67-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9-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5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5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5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5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5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8-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53-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78-1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재울로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69-6	2012.07.2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